

보도시점 2023. 11. 2.(목) 12:00
(2023. 11. 3.(금) 조간)

배포 2023. 11. 2.(목) 09:00

5세대 통신망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위한 통신 필수설비 개방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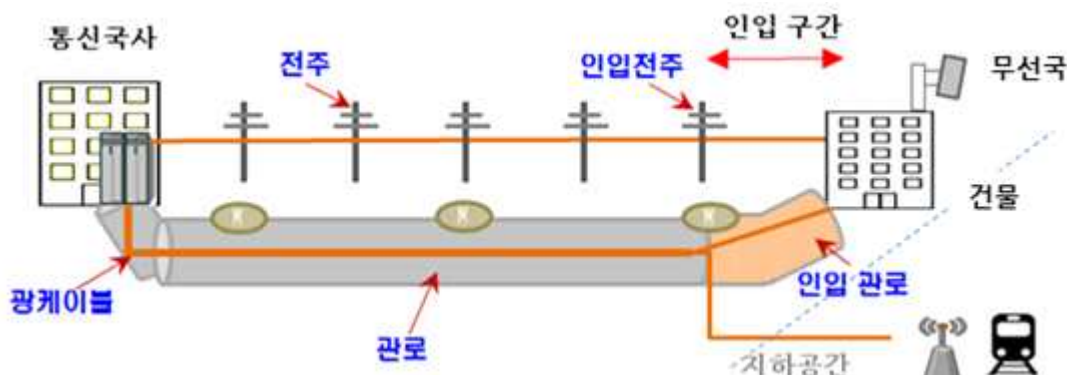
- 구축 3년 이내 설비 등도 예외적으로 개방 확대하여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
- 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 간 분쟁조정 절차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 「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」 고시를 개정하여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「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」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,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를 개선하여 신규사업자 진입을 지원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관로, 전주, 광케이블 등과 같은 필수설비의 이용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수 없도록 사업자 간 의무제공 대상설비·이용의 절차·대가 등을 규정해 놓은 제도로,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3년 「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」 고시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.

참고 : 이동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기반설비

이동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상면, 지하공간 등에 무선국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통신국사까지 연결해야 하며, 이때 광케이블 설치를 위한 관로, 전주 등 필요



※ (인입구간) 가입자측의 건물, 단자함 등으로부터 최초 접속점까지의 구간
(비인입구간) 시내구간 중 설비제공사업자의 국사로부터 인입구간 전까지의 구간

다만, 이 제도는 기존 사업자의 신규 통신망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어 그간 예외규정을 통해 구축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설비 등은 의무제공 대상설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왔으나, 과점구조가 고착화된 통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.

이번 제도 개선은 이러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보다 폭 넓게 기존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이를 통해, 앞으로 5세대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등록일로부터 5년 간 기존엔 의무제공 대상설비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관로, 광케이블과 구축된 지 3년 이내의 설비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.

참고 : 의무제공대상설비의 제외 요건 개선 사항(고시 별표2)

이동통신망 구축 용도의 주요 의무제공 대상설비 제외요건
◇ 구축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설비
◇ 인입구간에서 관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구간의 광케이블
◇ 비인입구간에서 광케이블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구간의 관로

⇒

제도 개선
5G 통신망을 새롭게 구축하는 신규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일로부터 5년 간 미적용

아울러, 이번 제도 개선에는 이동통신사와 시설관리기관* 간 발생하는 설비 제공 관련 분쟁을 설비제공지원센터인 중앙전파관리소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하고,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포함되었다. 이를 통해 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,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도 최소화될 전망이다.

* 지방공기업, 국가철도공단, 한국도로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 지하철, 철도, 터널, 교량과 같은 통신 케이블 및 이동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한 기관

과기정통부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“이번 제도개선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앞당기고, 통신3사 중심으로 고착화된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라며, “통신시장 경쟁의 유효성을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	책임자	과 장	박 철 (044-202-6660)
		담당자	사무관	김도윤 (044-202-6666)